

신 · 구 대조표

현	개 정 안
<p>제7조 (위원의 정수) 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4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단,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,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. <개정 2020.3.1.></p>	<p>제7조 (위원의 정수) 위원회의 위원은 <u>11명</u>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<u>5명</u>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<u>4명</u>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단,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,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. <개정 2021. . . .></p>
<p>제10조 (학부모위원의 선출)① 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3.1.></p> <p><신설></p> <p>④ (선거 홍보)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1.></p> <p>⑦ (선거인 명부 작성 시) 1. 직선의 경우 학생 및 유아가 1인 이상일 때 부·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. 2. <삭제 2016.2.12> 3. 학생 및 유아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.</p>	<p>제10조 (학부모위원의 선출) ① 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<u>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</u>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<개정 2021. . . .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<신설 2021. . . .></p> <p>⑤ (선거 <u>공보</u>)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. . .></p> <p>⑧ (선거인 명부 작성 시) 1. 직선의 경우 학생 및 유아가 1인 이상일 때 <u>에도</u> 부·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. 2. <삭제 2016.2.12> 3. 학생 및 유아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.</p>

<p>제11조 (교원위원의 선출)① (선출방법)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</p>	<p>제11조 (교원위원의 선출)① (선출방법)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, 교직원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단,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<개정 2021. . . ></p>
<p>제15조 (소위원회의 설치)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한다.<개정 2015.4.22></p>	<p>제15조 (소위원회의 설치)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<u>각 소위원회 운영 규정</u>으로 한다.<개정 2021. . . ></p>
<p>제20조 (회기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.</p>	<p>제20조 (회기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매년 <u>2월</u> 중에 개최한다.<개정 2021. . . ></p>